

대법원 2019도12766 공직선거법위반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1. 15. 피고인 조인묵(양구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출판업자가 소지하고 있던 '육도삼략' 원고를 형식만 일부 바꾸어 그대로 출간하면서도, "육도삼략 - 6가지 지혜로 3가지 전략을 얻어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면서 "조인묵 편저"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저서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고 홍보하고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12766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구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임
- 피고인은 2017. 1.경 김○○과 함께 피고인의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책을 출간하기로 하고, 김○○으로부터 출판업자인 이○○을 소개받아 이○○이 소지하고 있던 '육도삼략' 원고를 형식만 일부 바꾸어 그대로 출간하기로 공모하였음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5. 사실은 피고인이 '육도삼략' 원고를 직접 편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직접 편저한 것처럼 "육도삼략 - 6가지 지혜로 3가지 전략을 얻어라"(이하 '이 사건 책')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면서 “**조인묵 편저**”라고 기재하였음

- ▣ 피고인은 2018. 2. 24. 강원 양구읍에 있는 양구문화복지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책을 저술한 것처럼, ‘**피고인의 저서** <육도삼략 - 6가지 지혜로 3가지 전략을 얻어라> 출판기념회가 열린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같은 취지로 초대장을 발송하고, 저자로서 ‘북토크쇼’와 ‘저자사인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음
-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

나. 소송경과

- ▣ 제1심 : 무죄
- ▣ 원심 : 항소기각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이 사건 책에 **피고인 ‘편저’**로 표시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출판기념회 등에 **피고인을 ‘저자’**로 표시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¹⁾

나. 판결 결과

- ▣ 상고기각

다. 판단 내용

- ▣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책에 피고인 ‘편저’라고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음

1) (참고) 검사는, 원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도 ‘허위사실’ 여부를 다투었으나, 상고이유에서는 피고인의 ‘범의’ 여부만을 다투고 있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사실조회회보서를 통해 “‘편저자’는 편집저작물인 책을 쓴 사람을 지칭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음
⇒ 피고인을 편집저작물인 이 사건 책의 공동저작권자라고 본다면, ‘편저’를 ‘편집저작’의 줄임말로 볼 수도 있어 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을 편집저작물인 이 사건 책에 관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책의 편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편자(編者)’ 내지 ‘엮은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출판기념회 등에서 ‘저서’ 내지 ‘저자’라는 표현을 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음
-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은 출판기념회에서 이 사건 책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책에 관한 협의의 ‘저자’가 아닌 ‘편저자’인 사실을 인식할 것임이 비교적 명백히 예상됨
 - 피고인이 ‘저서’ 내지 ‘저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건 책이 자신이 관여하여 발간되었음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문자 및 초청장 발송, SNS 작성, 출판기념회 현장 준비 등 행정적인 일을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닌데, 피고인이 행사 준비 실무자에게 ‘저자’ 내지 ‘저서’라고 표현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위와 같은 판단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책의 출판과정’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아래와 같음

- ① 이 사건 책의 바탕이 된 원고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중국 고전인 ‘육도삼략’을 번역·편집한 뒤 해설을 추가한 것인데, 출판업자 이○○이 수년 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 원고를 양도받았음
- ② 피고인은 2017. 1. 무렵 이○○과 사이에 이 사건 책을 출판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7. 2. 및 3.경 이○○에게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음
- ③ 그 출판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로 표시되어 있음(위 출판권설정계약서 작성일은 2017. 3. 7.로 기재되어 있음)

- ④ 피고인은 이○○에게 한문 원문을 삽입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책의 성격이 처세술 서적에서 인문학 서적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편집방침도 인문학 서적에 적합한 것으로 변경되었음
- ⑤ 피고인은 이○○에게 소제목, 목차순서 등의 일부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책이 편집·수정되기도 하였음
- ⑥ 이 사건 책은 2017. 4. 15. 출판되었음

3. 판결의 의의

- ▣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